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13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기표 · 한준호 · 맹성규
문진석 · 이성윤 · 김영진
이연희 · 송재봉 · 김남희
박수현 · 강준현 · 조승래
김용민 · 문금주 · 김원이
의원(15인)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협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는 법무부가 관장하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청의무를 부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동거하는 사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출생한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읍·면의 장은 최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외국인아동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하여 열람 또는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 및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아.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의 정정 절차, 본인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의 출생등록부 폐쇄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차. 통보 및 출생등록정보의 목적 외 제공등 금지를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교부받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둠(안 제25조).
- 카. 출생등록 신청 또는 사망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
- 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3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출생등록”이란 출생의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시식별번호”란 출생자 모에게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등록 절차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하여 해당 출생자 모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장) 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

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법무부가 관장한다.

②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과 출생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신청의 접수, 출생등록 증명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통보 및 출생등록정보의 목적 외 제공등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장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신청

제7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및 체류지
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임시식별번호
4. 신청인의 성명·출생연월일·신청인의 자격

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⑥ 부의 기재는 모와의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제6항에 따른 부의 기재를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청의무자 등) ①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사람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③ 신청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모의 외국인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 또는 임시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사실의 기록, 모의 임시식별번호 부여 절차 및 방법, 출생정보 제출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출생등록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시·읍·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록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등록 신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생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제7조제1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등록 확인, 출생등록 최고, 출생자의 성명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12조(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외국인아동의 성명·성별
2. 출생연월일 및 장소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임시식별번호
4. 출생등록번호

5. 기타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번호 부여 및 출생등록부의 기록·보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출생등록사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출생등록부와 제20조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보관·관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외국인아동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2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출생등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③ 출생등록증명서는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외국인아동의

성명, 출생등록번호 및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출생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2조에 규정된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출생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출생등록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6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출생등록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생등록증명서의 수수료) ①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읍·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시·읍·면의 수입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생등록부 기재사항의 정정) ①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

·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출생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사건 본인의 출생등록신청 수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신청인, 신청사건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사실을 안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출생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출생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생등록부를

폐쇄한다.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임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1조(불복절차) ① 출생등록에 관하여 신청인, 신청사건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처분 내용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아동의 사망

제22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외국인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신고는 제23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국적(국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출생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망신고의 장소)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인아동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사람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무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3조제1항의 신고의무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준용) ①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2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 정정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아동 출생등록신청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